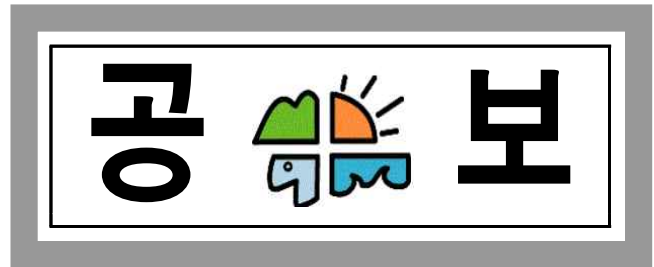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14호 2022년 9월 23일(금)

규 칙

-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5
-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7
-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도문동 1499-2, 2120-1) .. 30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종로1-5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32
-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 .. 33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 34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35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37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 1534호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确定的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가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속초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추진·평가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이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⑥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평가단은 속초시 민간 자문기구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추진상황 등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속초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 1535호

속초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제1조(「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의 개정) 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속초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을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의 개정)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처산금취급규칙”을 “속초시 농지개량사업 환

지처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 1536호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매주 간부회의 종료후에”를 “매주”로 한다.

제14조 중 “「속초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 1537호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용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제20조 관련)(제20조관련)

1. 표시대상

-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정수등록된 모든 차량 (임차차량 포함)
- 다만, 전용, 의전 승용차량 제외

2. 표시 내용

- 속초시 캐릭터, CI, 슬로건 등을 속초시명과 함께 디자인
- 기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공무수행’ 표시 기타 로고 등은 차량 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3. 표시 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
- 승합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중간 부분에 표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 1538호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3조”를 “「지방자치법」 제29조”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공통사항 단위업무 중 제8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시장	
공통사항	8.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가. 출장·연가·휴가 및 공가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 시장, 부시장	기안				○	
	(2) 국장, 소장	기안			○		
	(3) 과장	기안					
	(4) 동장	기안		○			
	12.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국·도 및 시·비) 관련 사항						
	나. 보조사업 집행(「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	기안		○			
	15. 사무 인계·인수						
	나. 담당관, 국장, 소장	기안				○	
	다. 과장, 동장	기안			○		
	16. 민원(상급기관 이첩·민원포함) 서류						
	가.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진정 및 건의서		기안				○
	나. 중요한 청원·진정 및 건의서	기안			○		
	다. 경미한 청원·진정 및 건의서	기안			○		
	라.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마. 복합민원서류 협의(2개부서 이상 관련 인가·허가)	기안		○			

별표 자치행정과 단위업무 중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제71호, 제73호, 제85호,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시장	
자치행정과	67. 기록물관리 운영						
	다. 기록물 정리 및 지도점검	기안		○			
	68. 보존기록물 관리						
	나.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안		○			
	라.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관리	기안	○				
	69. 전자문서(온라)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가. 전자문서(온나라)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용자 등록관리	기안		○			
	라. 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기안		○			
	71. 기록관 운영관리						
	다. 기록관실 부대장비 유지관리	기안		○			
	73.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심의회 위원 위촉	기안			○		
85.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나. 전산보안업무 추진	기안			○		
다. 개인정보 보안 업무 추진	기안			○		
91. 데이터 관리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데이터 관리	기안		○			

별표 기획예산과 단위업무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서장	
기획예산과	20. 지방보조금 지원						○
	나. 지방보조금 심사	기안					
	다.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기안				○	
	라. 지방보조금 일반	기안		○			

별표 관광과 단위업무 중 제29호, 제35호,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서장	
관광과	29.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가. 참가계획 수립	기안			○		
	35.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36. 그 밖에 타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진흥, 관광개발, 설악동 진흥 및 개발, 관광홍보 축제에 관한 사무						

별표 문화체육과 단위업무 중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서장	
문화체육과	2. 속초문화관광재단						○
	가. 속초문화관광재단 지원 및 관리	기안					
	6. 설악문화제						
	가. 사업비 지원	기안				○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다. 사업비 정산·평가	기안		○			
	7. 실향민문화축제						

가. 사업비 지원	기안				○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안		○			
다. 사업비 정산·평가	기안		○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관리						
가. 등록	기안		○			
나. 변경등록신고	기안		○			
다. 행정처분	기안		○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	기안		○			
마. 지도·단속	기안		○			
바. 교육	기안		○			
10. 공연장업·영화업·비디오물업·음악산업·게임 산업중 관리						
나.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기안		○			
바. 지도·단속	기안		○			
사. 교육	기안		○			
14. 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 수립		기안				○
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운영 및 관리						
16. 설악해맞이공원 및 로데오거리 아치조형 물 관리						
17. 출판업·인쇄업 관리						
18. 거리버스킹 공연장 운영						
19. 문화예술회관 운영						
20. 체육시설물 관리						
21. 체육시설업 관리						
2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가. 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각종대회 참가 및 훈련	기안				○	
23. 각종 행사유치 및 개최						
24. 각종 대회 출전 및 개최						
25. 체육단체 관리						
2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별표 민원토지과 단위업무 중 제3호, 제18호부터 제4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 교수장	국 장	부 사 장	
민원토지과	3.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가.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계획	기안				○	
	18. 청원업무						
	가. 청원심의회 운영	기안				○	

나. 청원업무 일반	기안		○				
19. 지적업무							
20. 지적공부관리							
21. 지적공부 복구							
22. 전산운영							
23. 측량성과검사 정리부	기안	○					
24. 토지이동지 정리							
25. 지적불합지 정리	기안				○		
26. 그 밖에 단체 등록번호 부여	기안		○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기안		○				
28.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기안		○				
2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3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아. 주소정보시스템 운영	기안		○				
자.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기안					○	
36.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유지관리	기안		○				
다. 인트라넷 시스템운영	기안		○				
라.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운영	기안		○				
마. 타 기관 지하시설물 탐사측량 공조체제 유지관리	기안		○				
37. 공간정보사업							
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마. 공간정보시스템 표준화 추진 및 제정							
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사.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38.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9. 개별지가에 관한 사항							
40. 위원회개최 및 위촉·해촉							
41. 부동산중개업 관련							
42. 부동산거래신고							
43. 주택임대차 신고							
가. 주택임대차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				
44. 지적재조사업무							
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	
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조정 및 사업완료 공고						○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	

	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마. 토지현황조사 및 확정조서 작성 바. 소유자협의회 관련업무 사.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 업무감독 아.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처리 자.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차.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카. 재조사 지적공부 관리 및 등기촉탁 타.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파. 조정금 공탁업무 45.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46. 지명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일자리경제과 단위업무 중 제25호,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장	
일자리경제과	25. 가스인가허가 자.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 차. 가스관련 지도점검 등 카.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 추진사항 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추진 사항 파. 가스유통구조개선 및 공급관련 사항 하.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연기 26.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		○	

별표 지역발전전략과 단위업무 중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장	
지역발전전략과	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고향사랑기부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5. 향만이용 종합대책 다. 향만이용 선사 및 화물여객 유치 라. 향로지원 기본계획 추진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다. 포트세일즈 활동 계획 수립	기안		○	
6. 북방항로 활성화				
7. 국제항로 각국기항지 정부간 국제교류 협력				
8. 환동해물류 활성화				
9. 통상물류 일반 등				
10. 속초항활성화 지원 업무				
11.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가. 크루즈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크루즈유치 홍보	기안		○	
12. 춘천속초철도건설 사업 추진				
나. 철도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지원	기안		○	
다. 각종 인·허가 사항 민원 및 환경분쟁조정 등	기안		○	
13. 역세권 개발사업 및 활성화				
14.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6. 그 밖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및 항로 개발, 철도사업,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복지정책과 단위업무 중 제1호, 제4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2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무	팀장	담당관 교수장	국장	부시장	
복지정책과	1. 주민생활지원						○
	라. 사회복지통합망 관리	기안		○			
	4. 호국 보훈 업무						
	사. 호국보훈행사 추진 계획수립	기안					
	8. 사회복지시설(기관)						
	다. 사회복지신문 보급	기안		○			
	10. 지역사회단체						
	라. 지역복지 특수사업개발 및 시행	기안		○			
	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기안		○			
	11. 저소득 지원						
	라. 사례관리 운영	기안		○			
	마.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	기안		○			
	12. 이웃돕기사업						
	가. 이웃돕기 성금모금 기본계획 수립						
	나. 지정기탁 성금품 지원						
	다. 강원도공동모금회사업 지원						
	13.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장학계정) 관리						

가.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장학계 정) 지급계획 수립						
나. 사회복지기금(저소득주민장학계 정) 대상자 확정 및 지원						
14.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가. 통합조사 시책 관리						
나.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조사						
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사 및 통보						
15.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관리 일반 및 기금관리						
나.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관련 계획수 립						
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라.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총괄						
바.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환급금, 부담금, 초과금 등 관리						
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결정 및 환수						
아. 의료급여관리사·의료급여보조 관 리 등						
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관리 등						
차. 재가 의료급여 관리						
16.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관리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연간조 사계획 수립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및 발 굴계획 수립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책정·중지·변경) 결정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처리						
마. 기초생계급여 지급 관리						
바.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 관리						
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아. 정부양곡할인 지원						
자. 교육급여 지급 관리						
차. 해산장제급여 지급 관리						
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책정·중지·변경) 결정						
17.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계정) 관 리						
가.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계정) 계획 수립						

	나.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계정) 수혜대상자 선정 다.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계정) 용자금회수 라. 용자금 체납처분 18. 자활사업 가. 자활지원계획 수립 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다.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19.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	--	--	--	--	--	--	--

별표 가족지원과 단위업무 중 제10호,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서장	
가족지원과	1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업무 16.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	기안		○			
		기안	기안		○		○
		기안	기안		○		○
		기안			○		

별표 교육청소년과 단위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교소장	국 장	부 장	
교육청소년과	2.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			○ ○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기안			○		
	가.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나. 위원회 운영 관리	기안					
	나. 평생학습강좌 운영계획 수립		기안				
	가.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서 수립		기안			○	
	1) 운영위원회 관리	기안		○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 관리						
	14. 아동학대 대응 업무추진						
	가. 아동학대 대응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다. 통합사례회의 및 사례판단회의 운영	기안		○			
	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기안		○			
	15.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18.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추진						
	가.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나.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 추진						
	19. 결박아동 급식지원 관리	기안					

별표 환경과 단위업무 중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교섭장	국 장	부서장	
환경과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안		○	○		
	가. 다수인 관련 민원 21. 일반폐기물처리	기안		○			
	가.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 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및 취소	기안		○			

별표 건설도시과 단위업무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교섭장	국 장	부서장	
건설도시과	7. 도로점용허가						

별표 안전총괄과 단위업무 중 제45호, 제26호, 제49호, 제51호, 제57호, 제59호,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교섭장	국 장	부서장	
안전총괄과	45. CCTV 통합관제센터 총괄업무 수행						
	46.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종합 기획						

	및 조정 49.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 유지관리 51. CCTV 방범취약지역 신규발주 및 노후 장비 교체 설치공사 57. 영상정보 민원 및 대외기관 업무사항 추진 59. 영상정보 열람, 반출 관리 63. 중대재해 관리 가. 연초 중대재해 대응 추진계획 수립 나.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다.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수립 라.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연 1회) 마.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바. 상, 하반기 중대재해 이행사항 점검 및 결과보고						
--	---	--	--	--	--	--	--

별표 교통과 단위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서장	
교통과	2. 택시(법인, 개인) 업무 바. 개인택시 차고지 변경신고 사. 운송개시 신고 4) 노선버스 운송약관신고 5) 노선버스 차령조정 3) 구역버스운송약관 신고 4) 구역버스차령조정 라. 차고지설치 확인 마. 운임 및 요금신고 바. 운송약관 신고						

별표 해양수산물 단위업무 중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담당관 과장	국 장	부장	
해양수산물	45. 해양레저관광 종합개발계획 추진						

별표 보건정책과 단위업무 중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과 장	소 장	부장	
보건정책과	1. 보건행정 업무추진						
	가. 보건행정 종합 기획 조정		기안		○		
	마. 청사관리 및 환경조성	기안		○			
	바.보안관리·보안진단의 날 운영		기안	○			
	사.비상대비 업무		기안		○		
	아. 인터넷 민원처리(시청, 보건소)	기안		○			
	자.보건의료행정서비스현장 관리		기안	○			
	차. 차량 운행일지	기안	○				
	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2. 회계업무 및 세출						
	라. 물품 구매, 등재, 관리	기안		○			
	마. 불용품 결정, 소요조회 및 폐기처 분	기안		○			
	3. 지역보건의료계획						
	나. 연차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평 가 및 수립	기안				○	
	4. 계약직 직원 채용						
	가. 계약직 직원 채용계획 수립	기안					○
	5.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가. 복무 지도·관리	기안		○			
	나. 국외여행 승인	기안			○		
	다. 민간의료기관 등 공중보건의사 운 영계획 허가	기안			○		
	라. 공중보건의사 주거시설 지원 및 관 리	기안			○		
	6.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운영	기안		○			
	7. 건강도시업무 기획·시행						
	나. 건강도시 관련업무 및 평가 관리		기안	○			
	다. 건강도시협의회		기안	○			
	8. 직원 복무관리						
	가. 계약직직원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기안	○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기안	○				
	9. 인력지원에 대한 근무명령						
	가. 의료지원 근무명령	기안		○			
	나. 각종행사 인력지원 근무명령	기안		○			

10. 방역사업 추진						
가. 방역소독 계획 수립(주·야간 방역 실시)	기안			○		
11. 소독업체 개설신고 및 관리						
나. 소독업체 지도점검	기안		○			
라. 소독업체 행정처분	기안			○		
12. 기생충 구제에 관한 사항						
13. 국가결핵관리사업						
사. 결핵관리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기안					○
아. 결핵관리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및 선발	기안		○			
자. 결핵관리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기안		○			
14.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관리						
15. HIV/AIDS예방관리						
16. 성매개 감염병관리						
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리	기안			○		
17. 한센병 관리						
18. 공수병 예방관리						
19. 임상검사실 운영						
20. 레지오넬라,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가.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신고처리 및 역학조사	기안		○			
다. 관리기관 지도점검	기안		○			
라.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관리	기안		○			
마.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기안		○			
21.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다. 소독의무대상시설 행정처분(과태료)	기안			○		
22.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치매관리사업 평가	기안			○		
23.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가.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기안		○			
나. 조기검진	기안		○			
24. 치매환자 돌봄지원						
가. 치매 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기안		○			
나. 치매환자 조호제공 및 수불관리	기안	○				
다. 치매노인 실종예방	기안		○			
라. 치매공공후견	기안		○			
마. 치매환자 사례관리	기안		○			
25. 치매 인지재활 및 인식개선						
가.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나. 치매가족 프로그램 운영	기안		○			

서 발부						
1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6. 골다공증 검진사업						
17. 갑상선검진사업						
18.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나.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안	○				
19. 회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나. 회귀질환자 사업비 예탁	기안				○	
20. 진료업무 추진						
나. 진료비 수납 및 불입	기안	○				
21. 모자보건사업						
다. 모자보건수첩 발급	기안	○				
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안	○				
마.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기안	○				
바.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기안	○				
아. 미숙아 등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기안	○				
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안	○				
너.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지원	기안	○				
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안	○				
러. 산후돌봄 지원	기안	○				
머. 산후돌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기안	○				
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기안	○				
서. 공공산후조리원 계획수립	기안			○		
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기안			○		
22. 모자보건사업 규제관리						
23.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4.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25. 영유아 건강검진						
26. 전립선질환검진						
27. 동맥경화증 검진						
28. 재가 잔폐환자 의료비 지원						
나. 건강관리 및 의료비지원	기안	○				
29. 장기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에 관한 사항						
사항						
30. 재가암환자 간호사업						
31. 노인실명 예방사업						
32. 공공보건의료사업						
가.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수립	기안			○		
33.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34.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35. 병의원 예방접종등록에 관한 사항						

별표 위생의약과 단위업무 중 제1호부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과 장	소 장	부서장	
위생의약과	1. 위생의약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나. 계획추진 및 점검	기안		○			
	2. 공중위생 관리 가. 공중위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나. 공중위생업 위생교육 관리	기안			○		
	다. 공중위생 홍보 및 통계 관리	기안		○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가. 센터 위탁(재위탁) 계획		기안				○
	나. 센터 보조금 지급	기안					○
	다. 센터 운영관리	기안		○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안		○			
	5. 건강기능식품 지도 관리	기안		○			
	6. 공중위생관리업소 위생등급제 관리	기안		○			
	7.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안		○			
	8. 아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관리 가. 아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신규 발급	기안		○			
	나. 아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기안	○				
	9. 식품제조업소 등 관리 나. 영업등록(신고)사항 관리	기안		○			
	다.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및 변경	○					
	10.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나. 모범업소 지정 계획 수립	기안					○
	11.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가. 집단식중독 발생보고 등	기안					○
	나.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도관리	기안		○			
	12.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3. 위생업소 행정처분 라. 행정처분사항 통보 및 이행확인	기안		○			
	14.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기안		○			
	15. 위생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위생 일반 가. 영업 허가 등 관리	기안		○			
	나. 영업 허가 등 변경	기안		○			
	다. 폐업 및 재교부 신고 등	기안		○			
	마. 업종별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기안		○			
	17.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가. 운용계획 수립(변경포함)	기안					○
	나. 기금운용관리(세입 및 세출)	기안		○			
	18. 위생교육						

가. 업종별 위생교육 관리	기안		○			
나. 행정처분 등	기안		○			
19. 의료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마. 의료인·의료기사 등 준수사항 관리	기안		○			
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 리	기안		○			
사. 세탁물처리 관리	기안		○			
아. 의료분쟁조정 중재, 의료사고 등 역학조사	기안	기안		○		
자. 의료기관 준수사항 관리	기안		○			
차. 정보공개 및 결격사항 관리	기안	○				
카. 의료재난대비 안전대진단관리	기안		○			
타. 교통편의제공 등 관리사항	기안		○			
파. 단순, 고충민원신고 접수등 처리사 항	기안		○			
하. 기타 일반사무처리 사항	기안		○			
20.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사.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	기안		○			
아. 응급의료기관 지정 관리	기안		○			
자. 재난대응대비 신속대응팀 관리	기안		○			
차.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정비	기안			○		
카. 기타 일반사무처리 사항	기안		○			
21.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관리에 관한 사 항						
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아. 결격사항 관리	기안	○				
자. 폐의약품 관리	기안	○				
차. 기타 일반사무처리 사항	기안		○			
22. 안전상비약품판매업소 관리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바. 결격사항 관리	기안	○				
사. 기타 일반사무처리 사항	기안		○			
23. 의료기기관리 및 화장품에 관한 사항						
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마. 결격사항 관리	기안	○				
바. 화장품 수거검사·회수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기타 일반사무처리 사항	기안	○			
24. 의약품등 제조 판매중단 회수 관련 사항	기안	○			
25. 마약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약국, 의료기관,도매상 등)					
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차. 기타 마약류 위임사무	기안	○			
26. 헌혈·혈액 관리에 관한 사항					
27. 병·의원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사 항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바.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기안	○			
사. 인력, 공동활용병상 관리	기안	○			
28. 안마시술소·안마원·치기공소·안경업 소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상)	기안			○	
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만)	기안	○			
마. 결격사항 관리	기안	○			
바. 기타 일반사무처리 사항	기안	○			
29. 의료인 관계 종사자 성범죄 및 아 동학대 경력 조회등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30.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계 획	기안				○
31. 구급차의 의료장비·의약품 등 관리 에 관한 사항	기안	○			
32. 온열·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관 한 사항					
33. 병·의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항					
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이 상)	기안			○	
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영업정지 미 만)	기안	○			

별표 하수도사업소 단위업무 중 제15호,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실 무	팀 장	동원 교장	국 장	부서장	
하수도사업소	15. 관용차량 유지관리	기안		○			
	27. 각종일지 및 대장 나. 중계펌프장 운영일지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2. 09. 19.~ 10. 04.(15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현 황	비고
			공부	지정			
도문동	1499-2	답	5,600	208	박태림	- 위치: 도문동 1499-2번지 - 용도: 단독주택 - 허가(신고)번호: 2022.09.14.	
도문동	2120-1	답	60	60	박태림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호선)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설악동 726-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5호선)사업
- 명칭: 속초 도시계획도로(중로1-5호선)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도 로	중로 1-5호 선	L=8,450m B=20m	L=620m, B=20m	도로확포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속초시장(건설도시과)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20. 03. 20. ~ 2020. 6. 1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사업 공사완료 공고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조양동 1450-14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 명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유원지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E-9/테마관광체험관)	231,748.3	1,893㎡	건축면적: 403.22㎡ 건축연면적: 1,499.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식회사 휴간도 대표 김은석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울산바위길 9-7, 2동 4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21. 06. 25. ~ 2022. 3. 15.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및 모든 구조물 귀속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금호동 47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 명칭: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13호선, 소로3-70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개설 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도로	소로2-213호선	L=272m, B=8m	L=56m, B=8m	L=216m, B=8m	
	소로3-70호선	L=31m, B=6m	-	L=31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207동 2801호(가락동, 헬리오시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17. 06. 02. ~ 2022. 6. 30.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및 모든 구조물 귀속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영랑동 1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31m, L=5,160m	B=3.75m, L=44.4m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확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미르플래닝 대표이사 임상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5동 403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2022. 7. 12.(접수일)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영랑동 1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4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미르플래닝 대표이사 임상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5동 403호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25~31m, L=5,160m	B=3.75m, L=44.4m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확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9. 23. ~ 2022. 10. 7.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대로3-4호선	B=3.75m, L=44.4m	343㎡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063	343					
1	영랑동	131-5	도로	4,361	236	속초시				
2	영랑동	148-103	도로	63	63	이태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05-27			
3	영랑동	148-99	도로	639	44	속초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속 초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2-98호선	B=8~10m, L=200m	B=8~10m, L=115m	
	소로3-140호선	B=6~11, L=110m	B=6~11m, L=1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설악디앤씨(주) 대표 홍순용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1길 2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2022. 8. 25.(접수일)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 소로2-98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설악디앤씨(주) 대표 홍순용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1길 22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2-98호선	B=8~10m, L=200m	B=8~10m, L=115m	
	소로3-140호선	B=6~11, L=110m	B=6~11m, L=110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5. 6.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9. 23. ~ 2022. 10. 7.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2-98호선	B=8~10m, L=200m	218㎡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소로3-140호선	B=6~11m, L=110m	68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053	899					
1	청호동	444-195	대	81	16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	조양동	1410-4	대	226	15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조양동	1410-5	대	357	36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4	조양동	1410-6	대	212	19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5	조양동	1410-8	대	258	36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6	조양동	1410-9	대	294	12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7	조양동	1410-11	대	255	8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층			
8	조양동	1410-14	대	96	48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 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9	조양동	1410-15	대	390	81	원인선 외 1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036, 2층 202호			
10	조양동	1410-29	대	17	17	(국)기획재정부				
11	조양동	1410-31	대	73	51	원인선 외 1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036, 2층 202호			
12	조양동	1410-33	대	24	24	원인선 외 1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036, 2층 202호			
13	조양동	1410-57	대	58	15	속초시				
14	조양동	1411-7	대	172	22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 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5	조양동	1411-8	대	360	83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 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6	조양동	1411-141	대	367	40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 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7	조양동	1423-20	대	108	21	속초시				
18	조양동	1410-13	도	1,412	62	(국)국토교통부				
19	조양동	1411-142	도	271	271	(주)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 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0	조양동	1423-21	도	22	22	속초시				